

##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이사회 회의록(Minutes of Meeting)

일 시	2017년 1월 7일 토요일 14:00~18:00	장 소	계명대 칠곡 동영학술림 세미나실
참 석 (19명)	회 장	김상수	
	부회장	이영주, 박종건, 최향옥, 안동립, 권오삼, 김태선, 박경미	
	이 사	최명수, 김성호, 이경현, 강상석, 강양순, 박태우, 오두호, 강일두, 김현정, 진영필, 차윤선	
불 참 (5명)	안경섭, 양은일, 이봉주, 신흥범, 김수미		
배 석	이철승 감사(후보), 이용숙 사무처장(대행)	기 록	김태선 부회장
회의명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이사회 (2017-01차)		

### <붙임자료>

- 1) (A01 시행세칙)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2) (A03 Foot-O 대회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A05 각 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4) (A07 IT장비관리규정)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5) 2016-2017 KOF 대표선발 최종순위 1부.

### 회의내용 및 결과

#### 1. 성원보고 및 개회

김상수회장은 이사 총원 24명, 위임 0명, 참석 19명으로 성원보고를 하고 이사회의 개회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함.

#### 2. 안건 심의

##### 가. 제1호 안건 : 시행세칙 개정의 건

○ 심의 결과 : (조건부 승인) 원안에서 아래 토의내용 수정을 조건부로 승인한다.

○ 결의 내용 :

##### ● 제15조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연회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김상수회장이 회비 변경의 배경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함.

##### ● 제21조 :

- 교육이사의 직무는 “오리엔티어링 지도자(2급, 3급) 양성에 관한~”에서 2급, 3급은 삭제하기로 함.
- 해외이사는 국제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국외 IOF 회원국의 오리엔티어링~”에서 국외를 삭제하고 “IOF 회원국 및 해외 오리엔티어링~”으로 수정하기로 함.
- 청소년이사의 직무는 “초,중,고등학생 오리엔티어링~”에서 “유아 및 청소년 오리엔티어링~”으로 수정하기로 함.
- 의무이사의 직무는 “도핑방지를 위한~”에서 “의료 및 도핑방지를 위한~”으로 수정하기로 함.
- 안전이사의 직무는 “오리엔티어링 대회 및 행사의 안전사항~”에서 “오리엔티어링의 안전사항~”으로 수정하기로 함.
- 일반이사의 명칭을 무기명이사로 하는 것이 옳다는 박태우이사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일반이사로 하기로 함.
- 심판이사의 직무에서 공인대회 심판 배정 업무가 누락되었다는 오두호이사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김태선부회장은 공인대회의 심판배정 절차는 향후에 대회감독관 선발이 완료되면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대회감독관과 심판을 배정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개정안에 재무이사의 직무가 누락되어 추가함. 연맹 재정의 관리 및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
- 노인담당 이사직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하기로 함

#### 나. 제2호 안건 : Foot-O 대회규정 개정의 건

- 심의 결과 : (원안 승인) 원안대로 승인한다.
- 결의 내용 :
  - 공인대회용 지도로 축척의 기준을 제한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 손바닥만한 크기의 지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도의 크기(경기장의 크기)도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하지만 지도 크기가 작아도 코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좋은 대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은 주최측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의 지도제작규정 제3장제7조제6항에 규정된 지도크기에 대한 권장 사항 외에 별도로 지도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기로 함.

#### 다. 제3호 안건 : 각 위원회 및 국가대표급 선발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 심의 결과 : (조건부 승인) 원안에서 아래 토의내용 수정을 조건부로 승인한다.
- 결의 내용 :
  - 제6조 2항 코디네이터 용어는 삭제한다.

- 제8조 4항 2호 내용에 심판을 추가한다. “②공인대회의 감독관 및심판선정및추천”
- 제8조 6항 1호 내용에 심판을 추가한다. “①~지도자 및심판양성규정을~”
- 제8조 7항 1호 내용에 심판을 추가한다. “①지도자 및심판양성교육”
- 제8조 7항 2호와 3호의 순서를 바꾼다.
- 제8조 7항 3호 ‘생활체육지도자’는 ‘각종스포츠지도사’로 수정한다.

#### 라. 제4호 안전 : IT장비관리 규정 개정의 건

- 심의 결과 : (조건부 승인) 원안에서 아래 토의내용 수정을 조건부로 승인한다.
- 결의 내용 :
  - 제9조 ‘불용결정’을 ‘불용처리’로 수정한다.
  - 제10조 1항 “~ IT장비이사 앞으로~”를 “~연맹으로~”로 수정한다.
  - 제10조 2항은 삭제한다.
  - 제10조 3항은 SI Card 대여 최소수량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으나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함.
  - 제11조 2항 “~이상내용을 IT이사 및 사무처에 통보~”를 “~이상내용을 연맹에통보~”로 수정한다.
  - 제12조 1항 “~연맹 사무처에~”를 “~연맹에~”로 수정한다. (사무처 삭제)

#### 마. 제5호 안전 : 감사 추천의 건

- 제안 설명 : 김상수 회장은 나중은 전 감사가 서울연맹 회장에 취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연맹 감사에 서울특별시연맹 이철승 감사를 추천하며 이사들의 동의를 구함
- 심의 결과 : (원안 승인) 이사들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 바. 제6호 안전 : 경기 중 선행 대상자 표창상신의 건

- 제안 설명 : 2016년 대만 아시아선수권대회 경기 중 자신의 경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부상당한 선수를 끝까지 도와준 선수(장은영, 유예진 선수)에 대한 중앙연맹 회장 명의의 표창 상신에 대해 이사들의 동의를 구함.
- 심의 결과 : (원안 승인) 이사들 만장일치로 표창상신 하기로 의결함.

### 3. 기타 토의 사항

- 1) 홈페이지에 수입/지출 재무사항을 게시하여 이사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향옥 부회장의 건의가 있었음.
  - 체육회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재무사항 공개는 곤란하며 기부금 사용내역만 게시 가능하다고 김현정이사가 설명함.
  - 김현정이사는 현재 연맹 보유 통장에 대해서 용도별로 총 10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3개는 정리할 예정이고 다음주 중 통장별 수입지출 내역이 정리되면 이사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예정이며 현재 기준 잔고와 지출예정인 법인등기비(약 400만원)를 고려하면 연맹잔고는 약 13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2) 경북연맹과 중앙연맹 사무실 공용 사용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납부 문제 등에 대해 사무처장을 대행하는 이용숙 경북연맹 회장이 관련 내용을 이사들에게 설명함.

- 2016년 11월 김상수회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료 1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경북연맹과 50%씩 나누어 지불하기로 계약함.

3) 대의원 총회 위임 참석 자격이 현재 부회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방연맹의 경우 불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임자격을 일반 이사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함.

- 총회 위임 자격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4) 김상수회장은 충남연맹 설립 추진에 대한 진행내용을 설명하고(공주대학교 강동완교수) 과거 충남연맹이 연맹 가입 후 제명사례가 있으므로 당시 충남연맹 설립 당시의 자료를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충남연맹 설립건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5) 2016년 대표 선발전 결과 보고(김태선 부회장)

2016년 대표 선발전 결과(붙임 참조)를 이사들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사들은 공인대회 엔트리 마감 이후에 참가한 선수(참가자)에 대해서 선발전 점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논의 함.

- 공인대회 참가신청 마감 이후에 정상적으로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경우, 선발전 점수는 인정하며 해당 대회의 입상 인정 문제는 주최측의 결정에 따름.

6) KOF 공인대회 인증료 신설에 대한 필요성 설명(김상수회장)

김상수회장은 향후 공인대회의 질을 높이고 실수를 없애기 위해 대회감독관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관 파견비 등의 비용은 지방연맹으로부터 공인대회 공인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함.

- 공인료를 받게 될 경우 현재 장비 대여료를 포함하여 지방연맹에 너무 많은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 공인료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그 규모를 지방연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고 온전히 중앙연맹 수익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대회감독관 파견에 따른 비용부담은 현재의 규정에도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인료를 파견비에 사용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음

- 대회 공인료는 과거 규정에도 있었던 적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기로 함. 마침.

## (A01 시행세칙)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017. 1. 7

현 행 (구)	개 정 (신)	사 유
<p><b>제15조(임원회비의 정액)</b>                      주요 임원 및 이사의 연회비는 아래와 같다.                      1.회 장: 200만원 이상                      2.부 회 장: 50만원 이상                      3.전무이사: 30만원 이상                      4.이 사: 20만원 이상</p>	<p><b>제15조(임원회비의 정액)</b>                      주요 임원 및 이사의 연회비는 아래와 같다.                      1.회 장: 500만원 이상                      2.부 회 장: 30만원 이상                      3.전무이사: 25만원 이상                      4.이 사: 20만원 이상</p>	회비 금액조정
<p><b>제21조(이사의 직무)</b></p> <p>1.전무이사: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의 의결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총 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p> <p>2.foot-O이사: 국내 FootO 경기대회의 기획, 운영담당, 관련 업무 진행, 공인대회의 감독 관 선임, 인재 양성, 경기력 향상 및 자료의 연구 보고</p> <p>3.MTB-O이사: 국내 MTB O경기대회의 기획, 운영담당, 관련 업무 진행, 공인대회의 감독 관 선임, 인재 양성, 경기력 향상 및 자료의 연구 보고</p> <p>4.Ski-O이사: 국내 Ski O경기대회의 기획, 운영담당, 관련 업무 진행, 공인대회의 감독관 선임, 인재 양성, 경기력 향상 및 자료의 연구 보고</p> <p>5.Trail-O이사: 국내 Trail O경기대회의 기획, 운영담당, 관련 업무 진행, 공인대회의 감독 관 선임, 인재 양성, 경기력 향상 및 자료의 연구 보고</p> <p>6.교육기술이사: 교육 및 지도자 및 인재 양성에 관한 기획, 교육용 교재의 출판편집</p> <p>7.지도제작이사: 오리엔티어링 지도 작성에 관한 모든 것 및 지도제작지도자 양성</p> <p>8.출판홍보이사: 오리엔티어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출판, 미디어 및 섭외 홍보</p>	<p><b>제21조(이사의 직무)</b>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 고유의 기본직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지 시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p> <p>1.전무이사: 사무처를 관리 감독하고 연맹의 행정 및 대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결 사항을 처리한다.</p> <p>2.foot-O이사: Foot-O 대회의 기획, 운영 관련 감독 및 선수선발 관리, 경기력 향상 및 경기기술 자료의 연구 보고</p> <p>3.MTB-O이사: MTB-O 대회의 기획, 운영 관련 감독 및 선수선발 관리, 경기력 향상 및 경기기술 자료의 연구 보고</p> <p>4.Ski-O이사: Ski-O 대회의 기획, 운영 관련 감독 및 선수선발 관리, 경기력 향상 및 경기기술 자료의 연구 보고</p> <p>5.Trail-O이사: Trail-O 대회의 기획, 운영 관련 감독 및 선수선발 관리, 경기력 향상 및 경기기술 자료의 연구 보고</p> <p>6.교육이사: 오리엔티어링 지도자 양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체육지도사 실기, 구술검정 관리</p> <p>7.지도이사: 오리엔티어링 지도제작 관련 정보교류 및 자료의 연구 보고, 지도제작자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p> <p>8.홍보이사: 연맹 미디어(사진, 동영상) 자료의 관리 및 홍보용 자료의 제작, 웹 페이지 자료의 관리</p>	내용 수정

<p>9.해외이사: 해외의 행사, 교류 및 자료 등의 정보를 조사 보고</p> <p>10.경기심판이사: 각 종목별 심판의 자격 인정, 심판 보수 교육 및 관리, 대회별 심판의 배정</p> <p>11.IT장비이사: 국내 IT 및 장비 운영담당 및 자료의 연구 보고</p> <p>12.청소년이사: 학교 체육 관련 사항과 청소년 관련 업무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업무 담당</p> <p>13.환경이사: 오리엔티어링 행사장의 자연 보호 및 환경 등에 관한 업무 진행</p> <p>14.도핑이사: 도핑에 관한 인지, 홍보 업무</p> <p>15.일반이사: 미지정 이사는 필요 시 지정업무를 운영 및 자료의 연구 보고</p>	<p>9.해외이사: IOF 회원국 및 해외 오리엔티어링 정보 수집 및 해외 자료 등의 조사 보고</p> <p>10.심판이사: 심판 양성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심판 보수교육 및 관리</p> <p>11.IT장비이사: 전자편칭시스템 및 계측시스템 장비관리 및 운영 감독, IT관련 기술 소개 및 자료의 연구 보고</p> <p>12.청소년이사: 유아 및 청소년 오리엔티어링 보급 활동 및 학교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세계오리엔티어링의 날(WOD) 행사의 계획 및 추진 업무</p> <p>13.환경이사: 환경보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소개, 관련 교육 등의 업무</p> <p>14.의무이사: 의료 및 도핑방지를 위한 활동 및 교육 등의 업무</p> <p>15.학술이사: 오리엔티어링 학술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업무</p> <p>16.안전이사: 오리엔티어링의 안전사항 점검 및 대책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의 업무</p> <p>17.재무이사: 연맹의 재정 관리 및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p> <p>18.일반이사: 기본 직무가 지정되지 않은 이사를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장의 지시에 의해 별도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p>	
--	---	--

# (A03 Foot-O 대회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017. 1. 7

현 행 (구)	개 정 (신)	사 유
<p><b>제10조 (대회 지도)</b></p> <p>1. 대회에 사용되는 오리엔티어링지도는 IOF 지도제작 규정과 KOF 지도제작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p> <p>2. 지도의 축척은 1:15,000 또는 1:10,000을 기본으로 하며 Sprint 경기의 지도 축척은 1:5,000 또는 1:4,000으로 한다. 각 축척에 대한 등고선 간격은 지도제작규정에 따른다.</p> <p>3. 참가자의 연령대 및 오리엔티어링 기술 수준에 따라서 위에 명시된 축척 외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회일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4. 지도의 오류 또는 지도가 인쇄된 이후에 실제 테레인에 발생된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준다면 지도는 재인쇄되어야 한다.</p> <p>5. 지도는 수분과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p> <p>6. 만약 대회장소에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 오리엔티어링 지도가 있으면 가장 최신판으로 대회를 하기 전에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b>제10조 (대회 지도)</b></p> <p>1. 대회에 사용되는 오리엔티어링지도는 IOF 지도제작 규정과 KOF 지도제작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p> <p>2. 지도의 축척은 1:15,000 또는 1:10,000을 기본으로 하며 Sprint 경기의 지도 축척은 1:5,000 또는 1:4,000으로 한다. 각 축척에 대한 등고선 간격은 지도제작규정에 따른다.</p> <p>3. 참가자의 연령대 및 오리엔티어링 기술 수준에 따라서 위에 명시된 축척 외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회일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4. <u>제3항과 관련하여 본 대회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도를 공인대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적용 예외신청서'(별지 서식 72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처에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5. 지도의 오류 또는 지도가 인쇄된 이후에 실제 테레인에 발생된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준다면 지도는 재인쇄되어야 한다.</p> <p>6. 지도는 수분과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p> <p>7. 만약 대회장소에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 오리엔티어링 지도가 있으면 가장 최신판으로 대회를 하기 전에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4항 추가</p>

## 규정적용 예외신청서

(Rule deviation application form)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 귀하

당 연맹이 주관/운영하는 공인대회에 사용하게 될 경기용 지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규정 적용 예외 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회 명		
개최일자	년 월 일	
대회장소		
경기형식		
지도 축척 / 등고선 간격	축척 :                      등고선 간격 :	
적용 지도제작 표준	<input type="checkbox"/> ISOM <input type="checkbox"/> ISSOM	
지도제작 및 검수자	제작 :                      검수 :	
규정적용 예외내용	관련 규정번호	
	규정 내용	
	예외신청 내용	

\_\_\_\_\_년    월    일

\_\_\_\_\_오리엔티어링연맹

대표자 : \_\_\_\_\_인

# (A05 각 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017. 1. 7

현 행 (구)	개 정 (신)	사 유
<p><b>제1조 (설치근거)</b>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7장 제39조에 의거 설치한다.</p>	<p><b>제1조 (설치근거)</b>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7장 제40조에 의거 설치한다.</p>	수정
<p><b>제4조 (위원회의 구분)</b> 위원회는 '종목경기위원회'와 '업무부문위원회'로 구분한다(총괄적으로 위원회라 한다.) 1. 종목경기위원회 - Foot-O, MTB-O, Ski-O Trail-O 2. 업무부문위원회 - 그 외 위원회</p>	<p><b>제4조 (위원회의 구분)</b> 위원회는 '종목부문', '지원부문',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며 각 부문에 속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종목부문: '종목위원회' 1개의 위원회를 둔다. 2.지원부문: '지원위원회'와 '행정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둔다. 3.전문부문: '경기위원회', '매프위원회', '규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둔다.</p>	
<p><b>제5조 (위원회의 구성)</b> 1. 각 위원회는 본 연맹 정관의 이사 및 위원회의 조직에 따라 동일하게 구성되며 시·도연맹의 이사가 위원이다. 단 도핑위원회에는 4개 종목경기위원회 위원장은 옵서버 자격을 인정한다. 2. 필요 시 오리엔티어링 및 스포츠 관련 인지도가 있는 경험자 중에서 종목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정수는 각 시·도 연맹의 수±5인 정도로 한다. 4. 각 위원회간의 업무(정리,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위원장으로 '전체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최연장자를 사회자(전체 위원회 의장/이하 의장)로 한다.</p>	<p><b>제5조 (위원회의 구성)</b> 각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종목위원회: 부회장 1명과 4개 종목이사 (Foot-O, MTB-O, Ski-O Trail-O)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2.지원위원회: 부회장 1명과 IT장비이사, 환경이사, 홍보이사, 의무이사, 학술이사, 안전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3.행정위원회: 부회장 1명과 재무이사, 해외이사, 사무처장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 4.경기위원회: 부회장 1명과 4개 종목이사, 심판이사, 지도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5.매프위원회: 부회장 1명과 지도이사, 상급지도제작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6.규정위원회: 부회장 7명과 4개 종목이사, 지도이사, 심판이사, IT이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7.교육위원회: 부회장 1명과 교육이사, 심판이사, 청소년이사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p>	
<p><b>제6조(위원회 임원 선출과 위원의 변경)</b> 1. 위원회 임원 선출 방법 ① 각 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각 종목·부문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를 선출한다.</p>	<p><b>제6조 (위원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b> 1.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부회장으로 자동 선임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2.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의 선출에 있어 '전체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하거나 협의하여 한 연맹에 편중되는 선출을 막도록 할 수 있다.</p> <p>③ 부득이한 경우 전자서명을 이용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통합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위원은 미리 전자서명(별지 제66호 서식)을 본 연맹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 임원이 각 시도 연맹의 관련 종목 및 부문 이사의 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현 위원장(또는 부위원장, 총무 순으로 관장) 주재로 ①, ②항의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한다.</p> <p>⑤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정관(제27조, 제28조/본 연맹 이사)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이사의 업무 수행, 임원회비).</p> <p>2. 위원회 임원이나 위원이 보직, 이동 등 변동이 있을 때</p> <p>① 위원이 변경된 경우 본 연맹 사무국과 이동된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p> <p>②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임기는 4년을 기본으로 한다. 이동이 있는 경우 임원 중에서 선임자 순으로 주도하여 보선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p> <p>③ 만약 위원회 임원이 타 위원회로 이적되었다면 평 위원으로 한다.</p>	<p>3. 위원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u>간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위원회 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u></p>	
<p><b>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b>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아래와 같다.</p> <p>1. 각 위원회 운영</p> <p>① 위원장 등 위원회 임원 선출 및 보선</p> <p>㉠ 구성원의 1/5명이 한 연맹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p> <p>㉡ 보선 경우 부득이 ㉠ 항의 원칙이 성립되도록 해당 시도연맹을 배제할 수도 있다.</p> <p>㉢ 보선의 처리는 2주 이내로 한다.</p> <p>② 중요 사업 등 필요로 하는 사항 관련</p> <p>③ 별도의 사업이나 지급 처리하여야 사항</p> <p>④ 연간 사업의 결산과 사업계획(매년12월 이전)</p> <p>⑤ 종목위원회의 임원 추천, 대표선수 선발 선정 및 징계 등의 업무</p> <p>2. 전체위원회 운영</p> <p>① 위원장 선임의 편중 여부 심의, 조정, 권장. (한 연맹에 편중된 선출의 조정, 권장</p>	<p><b>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b> <u>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그 운영 및 회의는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u></p>	

<p>등 조정할 사항의 심의)</p> <p>② 대표팀의 임원 및 선수 선발, 징계에 관한 사항</p> <p>③ 연간 사업의 결산과 사업계획(매년12월 이전)</p> <p>3. 전체운영회의(위원장 급 회의)는 위원회 의장이 회의를 주관 한다.</p> <p>4. 소집은 위원장 혹은 각 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한다.</p> <p>5. 각 위원회에서 안건을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찬성으로 결의하고 전체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사회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단.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 또는 의장의 의견으로 결정 한다.</p> <p>6.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 또는 유선결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7.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 관련이 있는 경우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p> <p>8. 업무의 관련성(협조체제)이 있는 안은 관련 위원회 회의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다.</p> <p>9. 규정(제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8조(위원회의 기능)</b></p> <p>1. 풋(Foot) O경기위원회 Foot O 대표선수 선발전 및 대표 선발, 훈련, 출전관리(임원) 업무, 도핑에 관한 업무, 경기력 향상, 기타 전반, 위원회 임원 선출</p> <p>2. 자전거(MTB) O경기위원회 MTB O 대표선수 선발전 및 대표 선발, 훈련, 출전관리(임원) 업무, 대회 운영 및 전문교육, 도핑에 관한 업무, 경기력 향상, 기타 MTBO전반, 위원회 임원 선출</p> <p>3. 스키(Ski) O 경기위원회 Ski O 대표선수 선발전 및 대표 선발, 훈련, 출전관리(임원) 업무, 대회운영 및 전문교육, 도핑에 관한 업무, 경기력 향상, 기타 Ski O 전반, 위원회 임원 선출</p> <p>4. 트레일(Trail) O 경기위원회 Trail O 대표선수 선발전 및 대표 선발, 훈련, 출전관리(임원) 업무, 장애인관련 일반.</p>	<p><b>제8조 (위원회의 활동업무)</b> 각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p> <p><u>1.종목위원회</u></p> <p>①Foot-O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p> <p>②Trail-O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p> <p>③Ski-O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p> <p>④MTB-O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p> <p><u>2.지원위원회</u></p> <p>①환경관련 활동 및 정보 교류</p> <p>②IT, 편칭시스템, 타이밍시스템 관련 기술교류</p> <p>③반도핑 활동 및 전파교육 등</p> <p>④기타 지원부문 활동</p> <p><u>3. 행정위원회</u></p> <p>①체육회관련 대외 업무 지원</p> <p>②대외협력 관련 업무 지원</p> <p>③기타 연맹 행정에 관한 정보 교류</p> <p><u>4. 경기위원회</u></p> <p>①국가대표 선발대상자 자격심의</p>	

<p>선수관련 업무, 대회운영 및 전문교육, 도핑에 관한 업무, 경기력 향상, 기타 Trail O 전반, 위원회 임원 선출</p> <p>5. 교육기술 위원회 오리엔티어링 기본 교육을 담당한다. 강사 및 지도자교육, 보수교육, 인재 양성 교육, 승급 등에 관한 교육 관리, 교육 표준화 작업, 교육 개발 및 마케팅 업무, 위원회 임원 선출</p> <p>6. 지도제작위원회 IOF 규정의 연구 및 교육, 지도제작의 기초, 제작 보급을 위한 수행, 제작 통일을 위한 사업, Map school 운영 권리, 기획과 운영, 기타 관련 업무, 위원회 임원 선출</p> <p>7. 출판홍보위원회 O-성장과 발전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및 미디어의 활용과 통제, 출판물 관련 업무, 협찬자 업무, 위원회 임원 선출</p> <p>8. 해외위원회 IOF, 회원국 등 내외적 업무 및 정보 제공 및 번역에 대한 업무, 해외 교류 업무, 위원회 임원 선출</p> <p>9. 경기심판위원회 심판관의 배출교육(보수) 관리, 대회의 심판 배정, 심판관의 수칙, 심판 관련 업무, 위원회 임원 선출</p> <p>10. IT 및 장비 위원회 관련 IT 자료 입수, 개발, 제공 업무, 위원회 임원 선출</p> <p>11. 청소년 위원회 학교체육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생 및 청소년 오리엔티어링 정책 운영, 위원회 임원 선출</p> <p>12. 환경위원회 교육장, 대회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련한 업무, 위원회 임원 선출</p> <p>13. 도핑위원회 도핑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위원회 임원 선출</p> <p>14. 특별위원회 본 연맹의 사업상 필요로 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둘 수 있다.</p>	<p>②공인대회 감독관 및 심판 선정 및 추천 ③대회규정 검토 및 개정안 이사회 상정</p> <p>5. 맵핑위원회 ①지도제작규정 검토 및 개정안 이사회 상정 ②공인대회 지도의 심의 및 승인</p> <p>6. 규정위원회 ①대회규정, 지도제작규정, 지도자 및 심판 양성규정을 제외한 각종 규정의 제·개정안 검토 및 이사회 상정 ②연맹 운영관련 내규 및 지침(Guide) 등의 검토 및 이사회 상정</p> <p>7. 교육위원회 ①지도자 및 심판 양성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②지도자 양성관련 규정의 제·개정안 검토 및 이사회 상정 ③각종 스포츠지도사 실기 및 구술검정 관리</p>	
--	---	--

# (A07 IT장비관리규정)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017. 1. 7

현 행 (구)	개 정 (신)	사 유
없음	<p>제9조 (장비의 불용처리) 장비의 불용처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용처리 승인신청서(별지 제70호 서식)에 불용사유를 작성하여 연맹 사무처에 제출한다</li> <li>2. IT장비이사의 확인 및 결재를 마친 후 이사회에 상정한다.</li> <li>3. 이사회 의결로 최종 불용 처리 한다.</li> </ol>	추가
<p>제9조 (대여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맹보유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 68호 서식에 의한 장비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사용 2주일전에 본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여 IT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li>2. 전자Card 100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전체 Set를 대여하여야 하며 카드 100개 이하일 경우 카드 수량을 기준으로 대여할 수 있다.</li> </ol>	<p>제10조 (대여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비의 대여 신청은 ‘장비대여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시·도연맹 명의의 공문과 함께 늦어도 사용 2주일 전까지 IT장비이사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li> <li>2. 장비의 대여는 IT장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결정된다.</li> <li>3. 전자 Card 100개를 기준으로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전체 Set를 대여하여야 하며 100개 이하일 경우에는 전자 Card 기준 10개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li> </ol>	수정 및 추가
<p>제11조 (장비점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만약 장비 수량이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늦어도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상내용을 중앙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li> </ol>	<p>제11조 (장비점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만약 장비 수량이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늦어도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상내용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li> </ol>	수정
<p>제12조 (반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비를 대여한 시, 도연맹은 장비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연맹 장비관리자(IT이사)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li> <li>3. 장비 반납시에는 당초 공급시의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손망실 또는 훼손품에 대해서는 실비로 배상하여야 한다.</li> </ol>	<p>제12조 (반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비를 대여한 시·도연맹은 장비 사용 종료 후 7일 이내에 연맹에 반납하여야 한다.</li> <li>3. 장비 반납시에는 당초 공급시의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손망실 또는 훼손품에 대해서는 ‘장비손망실보고서(별지 제 7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비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li> </ol>	수정

## IT 장비 불용처리 승인 신청서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회장 귀하

IT장비관리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장비에 대하여 불용결정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명	수량	취득금액	취득년월일	상태	불용결정사유

\_\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자 \_\_\_\_\_인



[붙임5 2016-2017 KOF 대표선발 최종순위

2016-2017 KOF 대표선발전 순위

: 소속연맹 경기 점수제외

순위	성명	소속 연맹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선발전 Point	
			전남대회	경북대회	서울대회	울산대회	경기대회	산림청대회	제주대회	한국선수권		
M21E	1	홍건희	서울	1000		0		1050	943	1000	1100	3150.0
	2	이광우	경기	976	950	860	888		752	691	1085	3010.9
	3	유병구	서울	956	1050			970	991			3010.3
	4	박종현	경기		1009		923	0	1000		865	2932.0
	5	소병조	경기		979	857	1000		883	845	907	2885.3
	6	이종석	서울		942	0		897		781	922	2761.0
	7	문정만	서울	899	969			821		885		2752.5
	8	강철진	제주	972	895	565		879	798		631	2745.8
	9	현보상	제주	858	744	824	950	836	793		856	2664.1
	10	김남권	경기			907			858		896	2661.4
	11	정종근	서울		960		700	816	760		803	2578.9
	12	서원하	경기			946		0	724	843	755	2543.3
	13	강장훈	제주		629			941			950	2519.7
	14	황명배	서울		739	0		813		685		2236.8
	15	하태현	서울		745	0		570	646	671	806	2221.5
	16	김성기	제주	670	752			600	665		674	2095.9
	17	권오삼	경기	656		657					677	1990.4
	18	박윤규	부산	604	703		554	546	636	578	639	1978.8
	19	이태주	울산		597		0		595		692	1884.5
	20	이성문	전남		645		424	582	619			1846.5
	21	김태상	경북	427		520	418	536	398		739	1795.3
W21E	1	차윤선	서울	996	1050		1000	1050	1000	1000	969	3100.0
	2	김현정	경기	1000	826	1000	794		844	782	846	2846.3
	3	김순희	경북			850	856	1020	726		858	2733.7
	4	박경미	제주	766	818	820	798	820	784		686	2458.3
	5	장서영	제주	920		474		742	648	0		2309.6
	6	최향욱	서울				717	519	713	852		2281.4
	7	오지현	경기		694	732		0	570	619	741	2166.9
	8	박산하	서울	779		0	668	660				2106.6
	9	김은경	제주			725		649			658	2032.0
	10	허명순	경북			545	464	732	642			1919.1
	11	임은주	경기			734	679	0	506			1919.0